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11. 9 선고 2022가단1044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9.

주 문

1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1. 9. 2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21. 10. 7. 접수 제99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전경훈

별지